(주주님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제15기 임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1년 08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12층 본사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3호 의안: 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1년 08월 06일

주식회사 래몽래인

대표이사 김 동 래 , 박 지 복(직인생략)

별첨1) 정관 변경의 건

정관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래몽래인이라고 부른다. 영문표기로는 Raemong Raein.Co.,Ltd 이라고 부른다.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래몽래인 이라고 부른다. 영문표기로는 RaemongRaein.Co.,Ltd (약호 RMRI)이라고 부른다.	조문 정비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및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사업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조문 정비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조문 정비
<추가>	제10조의3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조문 추가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 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동등배당 원칙 명시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정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조문 정비

서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 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정비
제 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7조의 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문 정비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조문 정비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8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조문 정비
제 20 조 (소집통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통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추가>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 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추가
<추가>	제 35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문 추가
제 37 조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 37 조의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조문 정비
제 42 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제 42 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조문 정비 및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 선임요건 완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 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5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제 47 조 (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7 조 (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조문 정비
	부칙 (2021. 8. 23.) 제1조(시행일) 2021년 8월 23일 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목적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대상자 : 박지복 외 7인
- 부여주식수 : 보통주 101,000주
- 부여방법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중 행사시점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
- 행사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 행사기간 :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후 5년 이내

별첨3) 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건

- 회사가 2021년 1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행사자(김동래 대표이사 외 1인)를 지정한 콜옵션(회사가 2019년 7월 18일 5개 회사와 체결한 콜옵션 계약에 따라 보유한 총 606,500주에 대한 콜옵션)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함.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08월 23일에 개최하는 ㈜래몽래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권유자 지정하는 자 ( )를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 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

의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정관변경의 건		
제2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3호	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수정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안건이 상정되거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위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 각 의안에 대한 기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백지위임장은 해당의안의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1년 08월 일 시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하여야 할 서류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